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유기농화장품을 정의하고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이에 따른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 및 연구개발 촉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농화장품”이란 이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적합한 화장품을 말한다.
2. “유기농 원료”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원료를 말한다.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유기농산물 또는 이 유기농산물을 이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지하는 국가별 유기농 인증기관 또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 원료로 인증받은 것
3. “식물 원료”란 식물(버섯과 같은 균사체를 포함한다) 그 자체로서 가공하지 않거나, 이 식물을 이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생산한 화장품 원료를 말한다.
4. “동물에서 생산된 원료”(동물성 원료)란 동물 그 자체(세포, 조직, 장기)는 제외하고, 동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서 가공하지 않거나, 이 원료를 가지고 이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생산한 화장품 원료를 말한다.
5. “미네랄 원료”란 지질학적 작용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을 가지고 이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생산한 화장품 원료를 말한다. 다만, 화석연료로부터 기원한 물질은 제외한다.
6. “식물유래, 동물성유래, 미네랄 유래 원료”란 3, 4, 5호의 원료를 가지고 이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화학적 공정 또는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원료를 말한다.

제2장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유기농 또는 유기농을 뜻하는 외국어와 이 외국어를 한글로 기재한 것(이하 “유기농 등” 이라한다)을 표시·광고하여 판매하는 화장품에 적용한다.

② 이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제3장 유기농화장품의 원료기준

제4조(원료의 범위) 유기농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원료는 [별표6]의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1. 유기농 원료
2. 식물 원료 및 식물유래 원료
3. [별표1]의 동물에서 생산된 원료 및 동물성 유래 원료
4. 미네랄 원료 및 [별표2]의 미네랄 유래 원료
5. 물
6. 합성원료 : 합성원료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소비자 안전과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하나 따로,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별표3]의 원료에 한하여 5%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7. [별표4]의 해조류 유래 원료

제5조(원료의 제조공정) ① 제조공정은 간단하고 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며, 원료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제조공정에서 허용되는 공정 또는 금지되는 공정은 [**별표 5**]와 같다.

제4장 유기농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제6조(금지 및 제한) 유기농화장품에서 일반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방사선 조사
2. 유전자 재조합 원료 배합
3. 니트로스아민류 배합 및 생성
4. 100 나노미터 이하의 평면 또는 입체구조나 부피를 가진 물질로서 불용성이거나 생체지속성을 갖는 의도적으로 제조된 물질 배합
5. 공기,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가스 외의 분사제 사용
6. [**별표 5]의** 금지되는 공정

제7조(작업장 및 제조설비) 유기농 원료 또는 유기농화장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제조 설비는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세척되어야 하고 제조 시에는 다른 설비와 구분되도록 '유기농화장품 제조 중'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조(포장) 용기와 포장은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재활용 물질 사용을 권장하며,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PVC)), 폴리스티렌폼(Polystyrene foam)은 사용할 수 없다.

제9조(보관) ① 원료 보관 시 유기농 원료와 기타 원료는 명확히 표시되어 구분되어 보관되어야 한다.

② 표시 및 포장 전 상태의 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다른 제품과 구분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제10조(청결과 위생) 제조 작업장과 제조 설비의 세척제는 [별표7]에 적합하여 한다.

제11조(폐기물 관리) 제조공정은 제조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기준

제12조(유기농화장품 구성 성분기준) 유기농 화장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3]의 합성원료는 5%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1. 내용물의 전체 구성성분 중 95% 이상이 합성원료를 제외한 제4조의 원료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구성성분에서 10%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2. 물과 소금을 제외한 내용물의 전체 구성성분 중 7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13조(구성 성분 비율의 계산) 화장품 내용물의 구성성분 비율은 전체 성분에서 해당 원료의 중량 비율로 계산하며,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원료별로 단위가 달라 중량과 부피가 병존하는 때에는 중량으로 환산 통일하여 계산한다.
2. 계산 시 제외되는 물과 소금은 의도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한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물과 소금은 계산에 포함한다.
3. 농축, 희석 등 가공된 원료는 가공 이전의 상태로 환산한 중량으로 계산한다.
4. 유기농 원료와 다른 원료가 혼합된 원료의 경우에는 해당 유기농 원료 비율만큼만 유기농 원료로 인정하여 계산한다.
5. 건조된 유기농산물을 추출한 원료의 경우에는 건조된 유기농산물 함량이 5%이상이면 그 추출물은 100% 유기농 원료로 계산하며, 함량이 5%미만일 경우 함량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다만, 건조하지 않은 유기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에 1/4를 곱한 양을 건조된 유기농산물의 양으로 한다.

제14조(표시·광고기준)① 화장품에 유기농 등으로 표시ㆍ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여야 하고, 적합함을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유기농 화장품은 용기 또는 포장에 전체 구성성분 중 유기농 원료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품명에 유기농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기농 원료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구성성분 중 95%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동물에서 생산된 원료

한글명(영문명)
계란 (Ovum)
꿀(Honey)
라놀린(Lanolin)
락토오스(Lactose)
락토퍼옥시다아제(Lactoperoxidase)
락토페린(Lactoferrin)
로얄젤리(Royal jelly)
버터밀크가루(Buttermilk Powder)
비즈왁스(Beeswax)
산양유(Goat Whole Milk)
쉘락(Shellac)
우유(Milk)
우유단백질(Milk Protein)
프로폴리스왁스(Propolis Wax (Propolis cera))

[별표 2] 미네랄 유래 원료

한글명(영문명)
구리가루(Copper powder CI 77400)
마그네슘옥사이드(Magnesium oxide CI 77711)
마그네슘설페이트(Magnesium sulfate)
마그네슘카보네이트(Magnesium carbonate CI 77713 (Magnesite))
마그네슘클로라이드(Magnesium chloride)
망가니즈바이올렛(Manganese violet CI 77742)
망가니즈비스오르토포스페이트(Manganese bis orthophosphate CI 77745)
망가니즈설페이트(Manganese sulfate)
비스머스옥시클로라이드(Bismuth oxychloride CI 77163)
소듐설페이트(Sodium sulfate)
실버(Silver CI 77820)
실버설페이트(Silver sulfate)
실버클로라이드(Silver chloride)
아이런하이드록사이드(Iron hydroxide)
알루미늄(Aluminum CI 77000)

한글명(영문명)
울트라마린(Ultramarines CI 77007) 징크옥사이드(Zinc oxide CI 77947) 카퍼설페이트(Copper sulfate) 칼슘설페이트(Calcium sulfate (Gypsum)) 칼슘카보네이트(Calcium carbonate CI 77220) 크로뮴옥사이드그린(Chromium oxide greens CI 77288) 크로뮴하이드록사이드그린(Chromium hydroxide green CI 77289) 티타늄디옥사이드(Titanium dioxide CI 77891) 페러스옥사이드, 적색산화철, 황색산화철, 흑색산화철(Iron oxides CI 77480, 77491, 77492, 77499) 포타슘설페이트(Potassium sulfate) 페릭암모늄페로시아나이드(Ferric ammonium ferrocyanide CI 77510) 하이드레이티드실리카(Hydrated silica)

[별표 3] 허용 합성 원료

한글명(영문명)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 (Dehydroacetic acid) 디소듐포스페이트 (Disodium Phosphate) 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Benzoic acid, its salts and esters) 벤질알코올(Benzyl alcohol)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Salicylic acid, and its salts) 소듐라우릴설포아세테이트 (Sodium lauryl sulfoacetate) 소듐바이카보네이트 (Sodium Bicarbonate) 소듐보레이트 (Sodium Borate) 소듐실리케이트 (Sodium Silicate) 소듐카보네이트 (Sodium Carbonate) 소듐하이드록사이드 (Sodium Hydroxide) 소르빅애씨드 및 그 염류(Sorbic Acid, and its salts) 수산화마그네슘 (Magnesium Hydroxide) 티타늄디옥사이드 (Titanium Dioxide) 포타슘카보네이트 (Potassium Carbonate) 포타슘클로라이드(Potassium Chloride) 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 (Potassium Hydroxide)

[별표 4] 해조류 유래 원료

한글명(영문명)
알긴 (Algin) 알긴산칼륨 (Potassium Alginate) 카라기난 (Carrageenan) 크산토필 (Xanthophyll)

[별표 5] 제조공정

1. 허용되는 공정

구분	공정명	비고
물리적 공정	흡수(Absorption)	불활성 지지체에 흡수
	탈색(Bleaching), 탈취(Deodorization)	가이드라인에 부합
	분쇄(Grinding)	
	원심분리(Centrifuging)	액상과 고상의 분리
	침전 및 상층액분리(Settling and Decanting)	
	건조 (Desiccation and Drying)	(건조기 또는 태양광 이용)
	탈(脫)테르펜(Deterpenation)	증기로 분별증류
	증류 및 추출(Distillation and Extraction)	증기이용
	압착(Expression)	
	추출(Extractions)	물 또는 용매(에탄올, 유기농 글리세린, 유기농 오일, 이산화탄소) 사용
	여과 및 정제(Filtration and Purification)	한외여과, 투석, 전기분해
	동결건조(Lyophilization)	
	혼합(Blending)	
	삼출(Percolation)	
	냉압(Cold Pressure)	

	열압(Hot Pressure)	
	열처리에 의한 멸균 (Sterilization with thermal treatments)	
	체로 거르기(Sifting)	
화학적·생물학적 공정	알킬화(Alkylation)	
	아마이드화(Amidation)	
	회화(Calcination)	식물 잔류물에 적용
	탄화(Carbonization)	수지, 유기농 유지에 적용
	응축/부가(Condensation/Addition)	
	에스텔화(Esterification)	
	에텔화(Etherification)	
	발효(Fermentation)	자연발효 또는 생명공학적 발효
	수화(Hydration)	
	수소화(Hydrogenation)	
	가수분해(Hydrolysis)	
	중화(Neutralization)	Na, Ca, Mg, K염을 얻고자 할 때
	산화/환원(Oxydization/Reduction)	
	양쪽성물질의 제조공정(Processes for the Manufacture of Amphoterics)	
	비누화(Saponification)	
	황화(Sulphatation)	
	가열(Roasting)	

2. 금지되는 공정

구분	공정명	비고
금지되는 제조공정	동물 유래 원료의 탈색, 탈취 (Bleaching-Deodorisation)	
	증기에 의한 분별증류를 제외한 탈(脫)테르펜 (Deterpenation)	
	에톡실화 (Ethoxylation)	PEG 등
	방사선 조사 (Irradiation)	
	설폰화 (Sulphonation)	
	유전자 공학을 이용한 기술 (Techniques using Genetic Engineering)	
	에칠렌 옥사이드 처리 (Treatments with Ethylene oxide)	
	수은화합물을 사용한 처리 (Treatments using Mercury)	
	염소가스 또는 염소화합물 처리 (Process using chlorine chemistry)	

[별표 6] 오염 물질

구분	종류
중금속(Trace)	카드뮴, 수은, 납, 크롬, 구리, 니켈, 아연, 몰리브덴, 비소, 셀레늄
탄화수소	벤젠, 톨루엔 자일렌,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농약류	살충제, 곰팡이 제거제, 제초제의 잔류물
다이옥신류	폴리염화디벤조다이옥신 (P.C.D.D), 폴리염화디벤조푸란 (P.C.D.F), 폴리염화비페닐 (P.C.B)
방사능	방사성 물질
유전자 재조합 농산물 (GMO)	유전자 재조합 (GMO) 부산물
동물 유래 물질 중 잔류 의약품	항콕시듐제(anticoccidials), 합성항생제,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s)
식물 중 오염 물질	질산염 등
마이코톡신(Mycotoxins)	곰팡이 독소
니트로스아민(Nitrosamines)	

[별표 7] 세척제

1.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원료

한글명(영문명)
암모늄계 (Ammonium-based)
염소계 물질 (Chlorine or Chlorine derived)
에톡실레이션 반응 부산물 (ethoxylated by-product)
유전자 재조합 미생물 (Geneticallly moidifided microorganism)
포름알데하이드 (Formaldehyde)

2. 사용가능한 원료

한글명(영문명)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과초산 (Peracetic acid)
락틱애씨드 (Lactic acid)
석회장석유 (Lime feldspar-milk)
소듐카보네이트 (Sodium carbonate)
소듐하이드록사이드 (Sodium hydroxide)
시트릭애씨드 (Citric acid)
식물성 비누 (Vegetable soap)
아세틱애씨드 (Acetic acid)
열수와 증기 (hot water and steam)
에탄올 (Ethanol)
정유 (Plant essential oil)
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 (Potassium hydroxide)
아래 조건에 맞는 계면활성제 - 이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원료로서 재생가능 - EC50이 10mg/L 이상 (Daphnia test) - 1차 생분해도가 28일 90% 이상 (OECD screening test) - 최종 생분해도가 28일 70% 이상 (OECD 301 F) - 혐기성과 호기성 조건에서 분해가능